#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13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 송석준ㆍ김형동ㆍ김상훈

태영호 • 윤창현 • 배준영

최승재 • 유경준 • 이헌승

성일종 · 추경호 · 정경희

이양수 의원(13인)

####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 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하지만 현행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없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 위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실제 투기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징 ·몰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

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주택지구 지정 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토지거래를 한 경우 이를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하고, 재직기관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취득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취를 취하도록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관리하는 업무를 맡게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이를 몰수·추정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몰수·추징을 하지 않음(안 제57조제4항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주택지구 내 토지거래 신고) ①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는 자(직계가족을 포함한다)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주택지구 지정 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토지거래를 한 경우 이를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직기관의 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된 내용이 주택지구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취득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취득행위라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신고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

항과 제2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몰수 또는 추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주택지구 내 토지거래 신고) ①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는 자 (직계가족을 포함한다)가 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주택지구 지정 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토 지거래를 한 경우 이를 재직하 고 있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직기관의 장은 해당 신고내 용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된 내용 이 주택지구 개발정보를 이용 한 위법·부당한 취득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취득행위라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제1항의 신고절차, 방법, 기
 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과 제2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몰수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몰수 또는 추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